



참여연대 공동대표 : 김중배 박상증 110-240 서울시 종로구 인국동 175-3 안국빌딩신관 3층 전화 : 723-5300 팩스 : 723-5055
참판하호텔 PSPD, 나무누리유니텔: 참여연대 / 전자우편: pspd@soback.komet.nm.kr / 인터넷 홈페이지 : <http://www.koreanet.org/~pspd/>

수 신 각 언론사 사회부 기자
발 신 참여연대(담당 : 사법감시센터 이태호 국장 : 723-5302)
제 목 사법시험 정원동결에 관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의 성명
날 짜 1998. 11. 6. (총 8 쪽)

성명서

정년 법조인들은 집단이기주의로 가는가?

또 다시 일부 법조인들이 사법시험 정원의 동결을 주장하며, 집단의 이기심을 드러내고 있다. 6.25 전쟁 이후의 최대의 국난이라는 IMF 관리체제 하에서 온 국민은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고, 실업자는 2백만을 넘고 있는 현실에서 자신의 수입이 준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를 줄이자는 주장을 하고 있다.

10년이 넘게 다니던 직장에서 하루아침에 거리로 내쫓기는 가장이 얼마이며, 일자리를 구하다 지하도의 노숙자로 전락한 사람들은 또 얼마인가? 우리사회에서 고소득을 올리는 직업군 중에 하나로 꼽히는 변호사들이 이토록 어려운 시절에 자신의 수입이 “조금” 줄어든다는 걱정 때문에 국민의 복지는 상관없이 자신의 밥그릇부터 챙기려고 하고 있다.

1995년의 사법개혁을 통해서 이제 “사법도 서비스”라는 인식은 변할 수 없는 도도한 역사의 흐름으로 각인되었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지속적 증원은 활발한 토론을 거쳐서 정부와 대법원의 합의로 결정된 것이다. 이는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대전제 아래 일반국민과 시민단체들의 적극적인 노력으로 일구어낸 소중한 역사적 산물이다. 국민들이 요구하는 것은 법조인들이 국민 위에서 군림하라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봉

사하라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도 일부 법조인들은 옛날의 환상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

지난번 의정부판사 비리사건에서 드러났듯이, 일부 법조인들의 담합구조와 부패로 인해 국민들에게 깊은 실망감과 환멸감을 안겨준 지 불과 한 해도 지나지 않았다. 아직도 수백명의 법조인들이 브로커 고용을 비롯한 부패사건으로 변협의 징계를 받고 있는 중이다. 그런데, 법조계의 자체 정화와 자숙의 모습을 보여야 할 이 시기에, 일부 법조인들은 한결같이 사법시험 정원을 줄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참으로 통탄할 일이 아닐 수 없다.

일부에서는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원으로 법조인의 질이 낮아지고, 변호사간의 과당경쟁이 문제되며, 문을 닫는 변호사까지 생기고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1995년의 사법개혁으로 사법시험 합격자의 증원이 이루어진 것은 1996년부터이며, 이들이 사법연수원과정과 군복무를 거쳐야 하는 점을 고려한다면, 아직 본격적으로 변호사의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마치, 변호사직업이 당장에라도 무너질 것 같은 태도를 보이는 것은 있지도 않는 사실을 가지고 국민을 기만하는 것이다.

또한 경제위기 때문에 법률수요가 줄어 더 이상 변호사의 증원이 필요없다고 하지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수많은 분쟁이 발생하고 법원에 사건이 폭주하는 것이 엄연한 현실이다(통계적으로 보면, 작년까지의 민사소송은 1970년에 비해 무려 9배가 증가하였다). 다만, 변호사 수입 사건이 줄어들 수는 있는데, 지금의 주된 분쟁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발생한 것이고, 일반국민들은 오히려 높은 변호사비용을 부담하지 못해서, 소송 자체를 아예 포기하거나 또는 한다하더라도 본인소송을 제기하기 때문이다.

온 국민이 고통을 분담한다는 취지에서 법조인들은 변호사수입비용을 공식적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에 국민들이 적절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것이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변호사 수를 줄여서 자신들의 고소득을 유지하겠다고 하는 것은 명백히 부도덕한 일이다. 이는 고통분담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공식적인 의사표시이며, 대다수의 어려운 서민의 입장보다는 높은 변호사 비용을 부담할 수 있는 극소수의 가진 자의 편에 서겠다는 천명으로 밖에 볼 수 없다.

지금 우리 나라는 세계와 경쟁할 수 있는 투명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 구조조정의 몸살을 앓고 있다. 투명한 사회란 법의 지배를 받는 사회를 말한다. 법이 지배하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 구석구석에 변호사가 배치되어 있어야 하며, 국민의 입장에서 동네 병원의 의사나 약사처럼 언제들이 필요할 때 저렴한 비용으로 변호사를 통한 법률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도 더욱 더 많은 변호사가 필요하다. 이제 변호사는 법정에 나가서 “선처를 부탁드립니다”라는 말 한마디로

고소득을 보장받는 직업이 아니라, 발로 뛰면서 국민들의 생활로 다가가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따른 적절한 수익을 받는 직업으로 자리매김 되어야 한다.

법조인 수의 획기적 증원은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공약 사항이라는 점이 분명히 인식 되어야 한다. 국민의 정부는 일부 법조인의 직업이기주의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온 국민의 진정한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 사법개혁은 국민의 생활에 직결되는 아주 중요한 개혁 프로그램이므로 마땅히 전체 국민의 의사를 물어 개혁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자의 수의 문제는 “국민을 위한 사법개혁”이라는 큰 구상 아래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국민의 정부는 전체 국민의 의사를 담아 진정한 개혁 청사진을 제시하고 실천하여야 한다.

※별첨 :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

<별첨>

법조인들의 주장에 대한 반박

1. 법조인 수가 늘면 과다경쟁으로 법조인의 부정부패를 부채질한다는 주장

그동안 법조계의 고질적인 병폐로, 전판예우, 브로커고용, 접대비관행, 실비관행, 급행료 등의 문제가 지적되어 왔다. 법조인수가 지금보다 적었던 10년 전, 20년 전에도 전판예우, 브로커 문제가 여전히 존재하였다. 오히려 대검 검찰부에서 브로커 변호사 수백명의 명단을 밝히고 변협에 통보한 것으로 안다. 그렇게 간단한 조사로 밝혀질 브로커 변호사가 활약하고 있는 것을 너무나 잘 알면서, 법조계는 왜 그동안 이런 비리구조를 그대로 존속시켜 왔는지가 의문이다.

변호사법, 검찰청법 등을 보면 법조인은 사회정의를 수호할 책임이 있다고 되어 있다. 그런데 법조인수가 늘면 법조계의 부정부패가 늘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대단히 창피스런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조계는 스스로 부패를 척결할 의지와 능력이 없다는 것인가.

변협에서 수시로 의뢰인에게 질문서를 보내어, 당신 변호사가 충실히 하느냐, 누구의 소개(브로커)로 가지 않았느냐, 혹 부당한 요구를 하지 않았느냐 하는 설문지를 보낸 적이 있는가, 다시 말해 <고객만족도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느냐고 질문을 하고 싶다. 적어도 고객을 존중하는 모든 회사, 경쟁이 심한 회사에서 <고객만족도 조사>는 필수적이다. 그런데 법조비리가 그렇게 문제되어도, 고객만족도 조사도 한번 실시하지 않은 것은 변호사단체, 사법부, 검찰 등이 부끄러워할 일이다. 법조계 부패는 그동안 국민이 알고, 법조인이 다 알고 있었다. 그런데도 <팔이 안으로 굽어> 서로 비리감싸주기를 하는 바람에, 처벌도 잘 안되고 지속되어 왔다.

법조인 비리 때문에 고통받은 것은 법조인이 아니라 국민이었다.

2. 경제불황 때문에 새로운 법률서비스가 창출되지 않으므로 정원 줄여야 한다는 주장.

과연 변호사 업계가 겪고 있는 불황이 어느 정도인지 궁금하다. 그리고 불황을 느끼는 변호사는 경력이 짧은 젊은 변호사에게 해당되는 문제이다.

기업의 경우 불황인 경우에는 제품의 판매가도 낮추고 고객서비스도 개선되는데 변호사업계에서 수입료를 낮추겠다고 발표한 것을 들어보지 못했다. 수입료를 낮추어 의뢰인을 유치하겠다는 발상은 대단히 인색하다.

그리고 IMF를 맞이하여 대국민 서비스 차원에서라도 변호사단체가 변호사 수입료를 자발적으로 인하하기로 결정하였다는 내용은 아직까지 들려오지 않는다. 변호사업계의 불황이라든가 법률수요가 많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전에 모든 기득권을 그대로 유지하려는 법조인들의 발상부터 전환할 때가 아닌가.

최근 고소득전문직 직종의 평균소득액이 발표되었다. 그 중 변호사의 연평균 수입이 2억을 상회한다고 한다. 물론 변호사들의 말대로 이 액수는 순수입이 아니라 매출액이다. 그런데 매출액을 정확히 신고하는 변호사가 몇 퍼센트나 있는가 먼저 자문해볼 일이다. 그 발표도 기초자료가 납세액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실을 정확히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 변호사들이 가운데 세법에서 규정한 대로, 돈번만큼 세금을 내고 있다(실질과세)고 믿는 국민은 거의 없다.

지금 변호사의 초임이, 내렸어도 500만원 정도라고 한다. 같은 전문가이고, 같은 수준의 능력을 가진 직종에 비해 너무 초임이 높다. 초임을 2-300만원으로 낮추기만 해도, 새로운 변호사 일자리가 크게 생겨날 것

으로 생각한다.

변호사단체는 職域이 확대되기를 기다릴 것만이 아니라 요구하여야 하고, 동시에 스스로 직역확대를 위하여 노력하는 자세를 보여야 한다. 정부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가 몇이나 되는가. 입법부인 국회의 입법조사관 중에 변호사가 한 명도 없는 현실이다. 소비자보호단체에 변호사가 몇이나 되는가. 노동조합에 들어가서 활동하는 변호사는 얼마나 되는가. 회사에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법률업무를 담당하는 변호사는 몇이나 되는가.

국가가 특정 직업의 수입을 보장해 주기 위하여 공급량을 줄여야 하는가. 현재 변호사 못지 않게 더 전문적이고 고급두뇌라고 할 수 있는 과학인력의 실업사태도 해결하지 못하면서 유독 변호사업에 대해서만 수요·공급을 조절할 필요가 있는가. 또한 어느 나라도 환자발생수를 예상하여 의사를 배출하지 않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수요·공급 조절은 법조인들의 特惠意識의 소산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

한국의 법률수요가 법률문화의 차이 등으로 인하여 외국에 비해 적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과연 법률수요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잠재적인 법률수요는 엄청나게 많지만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갈 엄두가 나지 않는 것인지는 분명히 하여야 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재판에 걸리기 전까지는 변호사를 찾으려고 하지 않는다. 바로 수입료에 대한 걱정 때문이다. 또한 변호사들 역시 사건수임과 연결되지 않는 法律顧問은 돈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즐겨하지 않는다.

참고로 작년까지 법원에 제게된 민사본안건수는 1970년에 비해 무려 9배가 증가하였다.

3. IMF이후 法律需要가 줄었는데도 유능한 인재들이 사법시험으로 몰려 高級人力이 사장되고 그 결과 국가적으로 손해라는 주장

많은 재능있는 학생들이 科學者가 되거나 藝術家가 되어야 나라가 발전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은 가장 공부 잘한다는 학생들이 너도 나도 법조인이 되어서 불우한 이웃을 돕겠다고 얘기한다. 그 결과 과연 한국의 法治主義가 세계적 수준으로 발전하였는가, 制度的 民主主義가 확립되었는가. 한국에서 법조인이 된다는 것이 신분상승과 출세의 지름길로 기능하였기 때문에 가장 유능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법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후진적인 법률문화가 만개하고 있는 것이다. 사법시험 합격인원을 늘리는 것은 이러한 현상을 타파하기 위한 첫 걸음이다.

4. 사법시험 합격자 증원으로 大學이 考試學院化하는 現象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격인원을 줄여야 한다는 주장

이것 역시 법조인의 稀少價値에서 비롯된 것이다. 인기가 없으면 사람들은 몰리지 않는 법이다. 현재 너무 부족한 법조인 수 때문에 이것이 해소될 때까지는 사법시험 정원을 늘리거나 줄이는 것과 상관없이 사법시험에 응시생이 몰리는 현상은 계속될 것이다.

원래 95년 사법개혁의 합의사항은 법조인의 수를 늘리고 법학교육제도를 개편하자는 것이었다. 그런데 법학교육제도 개편에 대해서는 법원, 변호사회에서 크게 반대하여 결실을 거두지 못하였다. <강화된 법학교육>을 하겠다는 데, 굳이 법조인들이 반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만일 새로운 법학교육제도가 실시되면, 법조인의 대량생산시대를 맞게 되며, 숫자를 줄이는 것은 더 이상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사법시험의 응시자격을 법학 전공자로 제한하는데는 동감한다. 하지만, 지금 시험준비에 몰두하는 응시

생을 위한 과도기간은 두어야 할 것이다. 대략 2003-2005년 정도부터 <법조인이 되기 위해서는 법과대학, 법과대학원을 나와야 한다>는 원칙 수립해야 한다.

5. 사법연수원생 수료생들의 취업도 어려워 辯護士 失業者가 생기고 있다는 주장

사법연수원은 지난 10월 21일부터 졸업생 취업지도를 하고 있는데 주목적은 로펌(Law Firm)들의 졸업생 유치경쟁 과열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극히 일부의 연수원 수료생들이 취업을 못한 것은 自發的 失業이지 구조적인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에게 정부부처의 사무관으로 취업하라고 하면 할 사람이 있겠는지 묻고 싶다. 사법연수원 2년차는 사무관보다 한 계급 위인 서기관대우를 받았는데 강등되어 가게될 행정부 사무관으로는 취업하지 않을 것이다. 또한 기업체에서 만일 과장대우를 해주고 월급 200만원을 준다고 했을 때에 그곳에 취업할 사법연수원 졸업생들은 없다. 이것이 IMF시대에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겪는다는 '불우한' 현실이다.

6. 사법연수원 시설의 收容限界 주장

교육시설의 한계를 이유로 법조인 배출숫자를 줄여야 한다는 주장은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들어보지 못했다. 연수원 수용한계문제는 결국 예산문제인데 현재 사법연수원생들에게 사무관과 서기관 대우를 하면서 봉급을 지급하는 것이 옳은 일인가. 오랫동안 고생해서 합격한 사법연수원생들에게 봉급을 주는 것이 안주는 것보다 낫다고 할 수 있지만 타당성은 없다고 본다. 이들 가운데 대부분은 수료 후 변호사 개업을 할 사람들인데 국가예산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법적 근거는 있어도 합리적 근거는 없다. 변호사보다 더 필요한 醫師를 만들기 위해 인턴과 레지던트 월급을 국가가 지급하고 있지 않다.

7. 사법시험 합격자는 高級人力으로서 어느 정도의 수입보장은 당연하다는 주장

사법시험 합격자들이 고급인력인 점은 인정한다. 그러나 그것은 사법시험 불합격자에 비해 그렇다는 것이다. 그보다 더욱 고급훈련을 쌓은 과학인력은 대우도 훨씬 열악하고, 많은 인력들이 실업상태에 빠져있으며, 해외취업으로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에서는 이들에 대한 취업대책이 없다. 그런 데도 만일 정부에서 사법시험 합격자들에 대해서만 유독 일정한 수입을 보장해주기 위하여 사법시험정원을 줄이려고 한다면 누구도 납득하지 않을 것이다.

8. 사법시험 합격자를 증원한 이후 합격생의 質이 낮아졌다는 주장

법조인들이 사법시험 합격자수가 증가한 이후 질이 낮아졌다는 주장을 많이 하는데 과연 그 근거가 무엇인지 모르겠다. 사법시험에 갓 합격한 연수원생들을 법조경력 10년 이상된 기성 법조인들이 가르치거나 대하면서 자신들의 과거 실정을 망각한 채 질이 낮다는 주장을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지금의 학생들은 과거보다 훨씬 많은 양의 책을 읽어야 합격가능하고, 과거보다 외국어도 더 잘한다고 본다.

9. 미국의 경우 변호사망국론, 과학기술퇴조와 산업생산력 약화의 원인을 1급 두뇌들이 변호사로 물리는 추세에 둔다는 주장

미국의 100만명에 이르는 변호사수로 인한 폐단이 일부 있음을 인정한다. 그러나 미국의 변호사 숫자와 우리 나라를 비교하는 것은 마치 아프리카의 굶주리는 아이들보고 잘 사는 나라 아이들의 영양과잉으로

인한 비만의 문제점을 들어 설명하는 것과 다름없다. 미국의 예를 들어 감축론 주장하는 것은, 마치 소말리아 사람들에게 다이어트 권고하는 꼴이다. 미국에는 비만이 문제일지 몰라도, 우리는 변호사과소로 인한 고통(높은 문턱, 비용, 보기도 어렵다)을 겪고 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은 우리와 상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미국의 산업생산력 약화와 기술퇴조가 변호사 과잉현상이 원인이라고 하는데 지금 미국 경제는 세계에서 가장 잘 나가고 있고, 기술수준 역시 세계 최첨단이다. 오히려 국제적 경쟁력있는 미국 변호사들의 해외진출로 인해 한국과 같은 나라의 변호사들이 걱정하고 있다. 또한 수많은 변호사들이 공익변론, 소비자소송, 환경소송 등으로 국민의 이익을 높인다.

1급 두뇌들이 변호사로만 물리는 현상을 걱정해야 할 나라는 바로 한국이다. 변호사의 희소가치 때문에 일정한 소득은 보장되어 있다는 점이 온갖 전공자들을 사법시험으로 몰리게 하고 있다. 만일 희소성으로 인한 일정한 수입보장이 변호사 직업의 매력이지 아니라 전문지식과 계속적인 노력이 변호사로서의 성공 여부를 좌우한다면 상황은 달라질 것이다. 즉 법학을 공부하고 조금만 노력하면 변호사 자격은 일단 취득할 수 있고, 변호사로서의 성공여부는 별개의 문제라는 인식이 일반화되면 너도 나도 사법시험으로 물리는 현상은 해소될 것이다.

10. GNP 대비 法曹人 數 역시 한국이 결코 적지 않다는 주장

GNP가 높은 경우 경제활동 등이 활발해서 상대적으로 법률수요가 증가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GNP가 낮은 나라는 법률수요가 적다는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예를 들어 GNP가 낮은 나라는 상대적으로 법률문화가 후진적이고 법치주의 실현도가 낮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이런 나라는 經濟活動에 수반되는 법률수요는 상대적으로 적을지 모르지만 人權侵害라든가 억울한 피해를 당한 사람들의 法律的 保護 必要性은 오히려 더 높다고 보아야 한다. 우리 나라의 경우도 그동안의 경제성장에 따라 작년의 민사본안사건 수가 1970년에 비해 9배가 증가하였다. 그런데도 법조인들은 변호사의 수를 제한하여 독점이익을 누리려고 하고 있다.

11. 변호사보수가 변호사수와 무관하며, 변호사수가 많으면 오히려 소비자의 부담이 증대한다는 주장

현재 변호사 수입료는 대한변협이 정한 기준과는 무관하다. 그리고 변호사 수입료는 경직되어 있어서 변호사 경력이나 능력과는 무관하게 요구된다. 변호사 수와 무관하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여기에서 비롯된다. 그러나 이것이 고쳐져야 할 점이라는 것은 누구나 인정할 것이다.

변호사가 많으면 사건을 되려 부추겨 소비자부담이 증가한다는 주장도 현실을 왜곡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변호사보수에는 엄청난 거품이 들어 있다. 그 거품은 변호사보수의 보이지 않는 담합 때문이다. 경쟁이 격화되면 보수가 떨어지는 것은 수요공급법칙의 당연한 이치이다. 실제로 변호사가 많은 지역에서 변호사보수가 떨어지고 있는 중으로 안다. 경쟁의 조건이 마련되면, 결국 가격협정도 깨어지기 마련이다.

12. 한국 변호사의 보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

미국의 심슨사건을 예로 들면서 한국 변호사의 보수가 높은 것이 아니라는 주장을 한다. 그러나 심슨 사건의 변호사들은 형사사건의 가장 대가로 공인된 사람들이고, 다른 변호사와의 경쟁에서 이긴 사람들이다. 그렇다고 우리처럼 승소수당을 받는 것이 아니라, 투입한 시간/돈 등을 환산하여 정확하게 내역 공개한다. 미국의 변호사보수는 우리처럼 (가끔은 영수증도 없이) 주고 받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매달 시간/보수 계산하여 청구하는 형식이다. 우리처럼 별일도 안하고 몇억씩 받는 파렴치함은 있을 수 없다.

13. 현실적으로 공기업, 지자체에서 법조인을 채용하지 않으며, 유사법조인만도 2만명이 넘는다는 주장

보통 때 변호사들은 유사법조인들을 법조인과 유사하게 취급한 적이 없다. 그런데 유독 숫자 계산을 할 때는 유사법조인을 법조인처럼 취급한다. 유사법조인 수를 감안해야 한다면, 우선 법조인들은 유사법조인에 대한 자세부터 교정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고급공무원 중 30%를 개방형 채용을 하겠다는 정부 발표가 있었고, 입법도 준비중이다. 만일, 변호사초임이 200-300만 정도가 되면, 앞장서서 시민단체에 일하겠다는 변호사들 나올 전망이다. 현재는 고소득의 유혹을 뿌리치기 어렵다. 변호사의 초임을 낮추면서, 공익에 봉사하겠다는 사명감을 가지면, 보다 낮은 직급에서 일할 수 있을 것이다. 현실적으로 판점사의 직급이 너무 높게 책정되어, 공직자사회에 위화감 초래하며, 행정고시 응시를 기피하게 만든다.

유사법조인은 미국에서도 Paralegals라 하여 많은 수가 있으며 대표적으로 공증인의 경우 100만명을 넘고 있다. 또한 유사법조인의 수를 평면적으로 단순합산할 수는 없다. 가령 행정서사의 업무는 변호사업무와 비교하기 곤란할 정도로 낮은 수준이며, 세무사와 변리사등도 세무조정과 특허출원 등 특정업무에 한정되어 있다. 현재 변호사의 90%가 이상의 대부분이 유사법조인의 주요업무가 아닌 송무분야에 종사하는 실정이다. 유사법조인이 담당하는 세무나 특허 등은 특히 국민의 생활과 직결되어 있으므로 국민은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단지 그 분야에서 경력이 있다고 해서 자격을 부여하는 현재의 체제로는 현상의 유지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국민의 편익을 도모하는 개선으로 나아갈 전망은 없다. 변호사의 수가 늘어나면 자연히 이러한 분야로 진출하게되어 국민들은 지금보다 훨씬 상위의 법률서비스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게 될 것이다.

14. 법조인도 피나게 경쟁한다는 주장

그동안 바람직한 경쟁의 모습도 있었도 그렇지 않는 부끄러운 경쟁도 있었다. 전문성의 경쟁, 친절함의 경쟁, 저렴한 가격경쟁으로 가면 좋은데, 여태까지 전관예우의 경쟁(누가 최근 옷을 벗었는가), 브로커의 경쟁(브로커에게 복비를 얼마 주는가), 연고의 경쟁(어느 학교 나왔고 연수원 기수 어떻게는가)도 있었다. 그런 경쟁은 이제껏 국민의 신체를 인질로 잡고, 몸값을 흥정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요즘 경쟁풍토가 점차 형성되어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요인은 역시 <숫자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숫자가 늘어나니 여러 좋은 점이 생겼다. 가령, 아직은 일부분에 불과하지만, 점차 변호사수임료가 인하되고 있고, 의뢰인에 대하여 친절해지고 있다. 또한 법원 주변이 아니라, 아파트전문 변호사도 생기고, 시골에도 진출하고, 다른 서울지역에 가는 모습 본다. 전문성을 얻기 위해 대학원에도 많이 오고, 유학도 간다. 몇십년간 내려오던 법조비리를 감시하는 풍토가 조금씩 생겨난다. 이러한 현상들은 국민의 입장에서 바람직한 것이다.

■별첨자료■ 1. 2. 3.

※ 이 자료는 통신망에도 올라갑니다.

* 나우누리 go PSPD / 인터넷 홈페이지 www.koreanet.org/~pspd/